2016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주요 개정사항

1 소득 및 지원대상 기준 완화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대상)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관련 양 제도 간 중복 여부는 기초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별도 판단

구분	국민기초 생계	국민기초 의료	국민기초 주거	국민기초 교육
신청 가능 항목	전항목 지원 불가	생계·사례관리 지원 가능	생계·의료 ·사례관리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 사례관리 지원 가능

2 위기상황 확대 및 주요시례 구체화

- 시장·군수 인정 위기상황 주요사례 추가 신설
- 가구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임시. 일용근로자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소주거면적(1인가구 14㎡)에 거주하며 최근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가구 ※ 소득감소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소득 20% 이상 또는 1인가구 40만원 이상감소

3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 강화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검토결과 우선 반영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의 현장 확인서 및 위기도 조사지에 의한 지원 결정 내용 및 범위 확대 (현장확인서 및 위기도 조사지에 의거 결정)

4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조정

- 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의료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집중 지원
- 생계비·주거비(보증금지원 신설)·교육비·연료비 등 긴급지원 수준 상향조정
- (사례관리지원) 주급여 항목 전환 및 급여액 등 상향 조정 (1회 50만원, 사례관리 대상자 → 연 1회 최대100만원, 현장공무원이 판단한 대상자)
- (의료지원) 거주기간 1년 이상 → 6개월 이상으로 완화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재활·요양병원료, 간병비(700천원 이내), 항암치료비 등 포함 지원
- (기 타) 의료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폐지

2016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주요내용

□ 추진방향

-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향후 슬라이딩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
 - 최저생계비 200%이하 ('15년)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16년도)
- 선제적·능동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공무원 권한 및 추가 지원사례 확대
 -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
 - 최소주거 면적에 거주하며 최근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가구 및 최근 3개월간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직 가구 (3개월 평균소득 20% 이상 감소 등)
- 긴급복지와의 차별성 강화를 위한 지원항목 변경
 -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간병비, 비급여 항암치료비 및 주거비 보증금 지원 등 신설
 - 유사·중복사업 및 이용률 저조항목,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항목 폐지
 - · 의료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최저생계비 120%이하 위기우려지원 항목 등
- 긴급지원 선지원 검토 일원화 (긴급지원 선조사 후 무한돌봄사업 신청연계)
 - 긴급지원 우선신청 ⇒ 긴급지원 조사 후 탈락자에 한해 2차 무한돌봄사업 順으로 지원

□ 예산현황

○ 2016년도 예산 : 12,023백만원(도비 3,146, 시·군비 8,877)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7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649,932원씩 증가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시가표준액)
 - 오산, 구리, 의왕, 하남, 과천
 - 중소도시(15시군):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 대 도 시(16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지원의 종류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비용 o 1,131천원(월/4인기준)				
주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및 간병비○ 항암치료비	○ 1회 500만원(700천원)이내 ○ 1회 100만원	2회(1회) 1회			
급여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21천원 (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2,000천원 이내	12회 1회			
	사례 관리지원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항목	○최대 1,000천원 (연 1회)	1회			
부기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초등학생 : 분기 214천원 ○ 중 학 생 : 분기 340천원 ○ 고등학생 : 분기 417천원 (수업료 및 압학금 학교장 고지금액 	2회			
가 급 여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92천원 / 가구 ○ 해산비 : 1회 1,000천원 ○ 장제비 : 1회 1,000천원 ○ 기타 항목 등					

□ 전후 비교표

구분		변경	경 전			변경	를 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200% 이하 (단위 : 원)				○ 소득기준 : 기 준중 위소득 80% 이하 (단위 :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최저 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기준중위 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소 득 기준	최저 생계비 200%	1,234,562	2,102,096	2,719,376	기준중위 소득80%	1,299,865	2,213,282	2,863,215	
	가구원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 생계비	1,668,329	1,976,970	2,285,610	기준중위 소득	4,391,434	5,203,849	6,016,265	
	최저 생계비 200%	3,336,658	3,953,940	4,571,220	기준중위 소득80%	3,513,147	4,163,079	4,813,012	
	* 7인 이상	는 1인 증가/	시마다 617,22	82원씩 증가	* 7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649,932원색				
지원절차	○ 현장확인(서식 1호) → 지원결정 및 실시				월 <u>우선 검토</u> <u>] 서식 1호, 2</u>		<u>사업 지원검토</u> 결정 및 실시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 ○ 주거가 확인되는 노숙인은 지원 가능 			기초 5 별도 판 구분 국민 신청 가능 항목 · 다만, 생 및 부상 하기 어 및 보상	급여종류별(생 한단 김기초 국민기: 의료 항목 생계· 사례관: 지원 가 기계 및 의료· 으로 인하여 렵다고 판단 - 확인되는 - 노숙인은 숙인 시설 등	제, 의료, ² 초 국민기초 주거 생계·의료 ·사례관리 등 지원 가능 답어 대상자 발생한 의 한 경우 지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 (간 중복 여부는 주거, 교육)로 국민기초 교육 생계·의료· 주가·사례 관리지원 가능 가 중한질병 료비를 감당 보 가능 노숙생활을 노숙인 쉼터 를 받는 대상 원 우선연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위기상황	2) 위기상황 세부내용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1) 의료지원 - <신 설>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신 설>	2) 위기상황 세부내용 나. 〈左 同〉 (1) 〈左 同〉 -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치료연장을 위해 이송 되는 경우의 요양 및 재활치료비포함. ※ 입원 및 수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항암치료 비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연 1회, 1,000천원 범위 내) ・ 보건소 암환자 지원자의 항암치료비는 제외, 단, 암환자 지원을 받아 수술 및 입원비로모두 사용하여 항암치료비로 사용하지 못한경우 지원 가능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자의 입원기간중발생하는 간병비 포함 ・ 간병비 최대 700천원 이내 제한(연장 불가) (2) 〈左 同〉 - 〈左 同〉 - 〈左 同〉 - 〈호 전단서, 근로곤란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제14호)등 서류 첨부・생계곤란으로 검사비 및 치료비가 없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할 때 의사 소견서로 확인가능 (○○질환이 의심되어 정밀 검사 필요 등)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질병·부상 등으로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4) 가정폭력 - <u><신</u> 설>	- < 左 同 >
	라. 화재, 자연재해~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이 확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 左 同 > - 퇴거명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원칙 예) 건물주 확인서 또는 내용 증명서 등 · 단, 건물주가 확인서 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 관련 증빙자료를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 가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지원은 불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바. (2) < 左 同 >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직업소개소 기록,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u>고용.임금확인서,</u> 당사자 진술 소득 신고서 등을 통하여 실직 사실 확인
	사. 시장·군수 인정 위기상황의 주요사례(예시) ○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기 설치) 등 에너지 빈곤 우려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사. < 左 同 >
	○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중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장기간 의도적 체납 가구 제외) -위기 사유가 단전, 단가스, 기타체납의 경우 지원되는 급여로 연체된 공과금을 우선(일부) 해결 하도록 안내, 재지급시 목적과 관계없 이 사용될 경우 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병원퇴원~	○ <u>한부모가족 (법률적 이혼가구 포함)</u> 이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병원퇴원~
위기상황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u>화재, 자연재해</u>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
100	○ <신 설>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 ※ 현장 확인서 및 위기도 조사지에 의거 지 원결정
	○ <신 설>	○ 가구원의 갑작스런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가구
	○ <u><신 설></u>	○ 최소주거면적에 거주하며 최근 소득이 현 저히 감소한 임시·일용직 가구
		최소 면적 (m') 14 26 36 43 46 56
		○ 구조적(계절적) 요인,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u>최근 3개월간 소득감소 등으로 급</u> <u>격하게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직 가구</u> ※ 소득 감소 및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이전 3개월 평균 소득대비 20% 이상 또는 1인가구 기준 40만원 이상 감소를 의미(일용소득 파악이 곤란한 경우 급 여통장사본, 국세청 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 업기록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확인)

변경 전	변경 후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빈곤가구 3. 가. 지원단위 ○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가구단위: 생계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이용료, 사례 관리비 	○ <삭 제> 3. 가. < 左 同 > ○ < 左 同 > - 가구단위 : 생계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 삭제>, <삭제>, 사례관리지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중증장애인, 출소자,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나. < 左 同 > - 형제·자매, 친인척, 동거인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 중 · 중증장애인, 출소자, 65세이상 노인, 근로 무능력자,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가구구성원의 학대 및 폭력 등에 의하여 임시거처에서 생활하여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제3장 < 左 同 > 1. < 左 同 > 가 가. <u>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u>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지원방법 ○ <u>< 신 설 ></u>	나. < 左 同 > ○ 위기상황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물품 (서비스)제공 가능			
다. 지원기준 (단위 : 천원/월)	다. < 左 同 > (단위 : 천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400 606 001 1105 1 210 1 514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418 712 921 1,131 1,340 1,549			
라. 지원기간 ○ < 신 설 >	라. 〈 左 同 〉 ○ 동일 위기사유로 긴급지원을 지원받고 무한돌봄사업 추가 지원시 맞춤형 물품 (서비스)으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물품지원 불가시 예외적으로 생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빈곤가구 3. 가. 지원단위 ○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가구단위 : 생계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 요금, 사회복지시설이용료, 사례 관리비 ○ 주급여, 부가급여 지원 병행 - 주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이용료, 사례관리지비등 나 .별도가구 지원 - 형제·자매, 친인척, 동거인의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출소자,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일시 거주하는 경우 제3장 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지원방법 ○ < 신 설 > 다. 지원기준 (단위 : 천원/월) 과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40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추가시 204원씩 추가 지급 자. 지원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생계 지원	○ 최저생계비 120%이하 위기우려가구(시장·군수 인정)의 경우 1회 2개월 지원 ○ < 생계비 지원기간(횟수)의 제한> 위기상황 중 (바)항~(중간생략)~(사)항 1년 경과 후 동일사유로 재지원 가능하며, 총 3회를 초과한 반복지원 불가	○ <삭 제> ○ < 左 同 > <좌동> 총 3회를(2015년 지원부터 적용) 초과한 반복지원 불가
	마. 생계비 지급일 ○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 지급	마. < 左 同 > ○ < 左 同 > ※ <u>최초 지급 후(결정일), 익월 부터는 매월</u> 20일 일괄 지급 가능
의료 지원	2. 의료지원 가. 지원대상자 ○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본인부담능력자(통장 잔고 등) 30만원 이하 소액의료비 지원 제외 ○ 질병사유가 같을 경우(동일질병) 지원종료 시점 1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 신 설 > 나 .지원방법 ○ < 신 설 >	※ < 左 同 > 다만, 항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소액의료비 지원 제한 해당없음
	다. 지원금액 및 범위 (1) 지원금액: 1회 500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의료비 지원액수가~(생략)~(사전심의 원칙, 불가피한 경우 지원연장 결정 후 1개월 이내 사후심의)를 통하여 연장 지원 여부를 500만원 이내에서 결정 - < 신 설 >	항목 지원 -< 左 同 > <u>지원종료 3일 이전에</u> 무한돌봄 연장심의위원회~< 左 同 > - 긴급지원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시 미지원 되는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후 비급여 항목 지원 ○ < 신 설 >	- < 삭 제 >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u>비급여</u> 항목 지원 - 긴급지원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시 미지원 되는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u>< 신 설 ></u>	○ 항암치료비 : 년 1회 100만원 이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항목 지원 (년 1회 100만원 한도, 총3회 이상 지원 불가) - 연장지원 불가, 총 3회 지원 시 재지원 불가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는 제외 원칙 이나, 수술 및 입원비로 모두 사용하여 항암치료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병비 : 중한질병으로 입원기간 중 발생 한 유료간병비 지원 - 10일 이내 최대 700천원 (년 1회, 의료비 연장시 재지원 불가) ※ 간병비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의료비를 집행할 수 없음에 유의.
의료	(2) 지원범위 (가) 지원이 결정된~(생략)~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지원요청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는 지원 불가	※ <u><삭세>,</u> 의료기구 구입비, 세승명료, 보호사 시대는 지위 부가
지원	원	이송 되는 경우의 <u>요양 및 재활치료비 포함</u> ※ 의료비 지원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생명의 유지와 관련이 없으나, 의료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급병실 이용료, 선택적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u>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진단서 등에 불가피한</u>
	○ < 신 설 >	사유 명시된 경우 상급병실은 3일 이내 지원 가능) ○ 수술 및 입원비 지원대상 제외 : 치과, 안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등 (재활치료비는 입원 및 수술과 연계시 지원 가능)
	라. 기타사항 최저생계비 120% 이하 해당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 검토 < 신 설 >	라. 〈左 同〉 ○ <u><삭 제〉</u> ⇒ 지원항목 폐지 ○ <u>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비용이 150만원</u> 이상 등 과다하게 청구되어 진료비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또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심사를 요청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함. ※ 긴급지원의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참고 (긴급지원사업안내 46p)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의료 지원	○ < 신 설 >				○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성 중 의료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600만 이하 대상자의 경우, 지원범위 및 소득·지 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 선택 가능			
주거 지원	3. 주거지 나. 지원 ¹ ○ <u>< 신</u> 다. 지원 ² 대도시 중소도시 라. 지원 ² 바. <u>< 신</u>	강법 설 > 기준 1~2 인 346 227	3~4인 574 378	(단위: 천원) 5~6인 757 498	보증금 일부를 - 지원의 - 무한들 - 자연 - 무한들 - 사업 - 대상자 - 보증금 - 대상자 - 보증금 - 자원의 - 자원의	는 同 > 및 화재 등 당 마련이 불 등 임대인에 박 : 200만을 통봄 성금을 가는 이 대상 다음을 가는 이 등록 이 시한 기준 기준 기준 1~2 인 374 245 기간 : 3개월 다음 기준 기간 : 3개월 기	가피한 대상지 게 직접 지원 한도(1회 여 우선 활용하 자체에서 연기 자 지원 제외 가보유액이 필 가지는 임대계 - , 통장사본, 류를 일체 제 3~4인 621 408 가구별 2,000 현 지원 가능(발 등) 체납금 되 가능(발	이상 지원불가) 나여 지원 실시 체된 유사 지원 기 교금액 이상인 이약서, 임대인 임대계약사실 출 (단위 : 천원) 5~6인 820 538
교육지원	1	장·군수 인정 하 빈곤우리	성 위기상황 병가구 제외)	중 최저생계비	나. < 左 - <u>단, 방</u> 과	최저생계비 同 > <u></u> 바후 자유수		지원항목 폐지) 지원, 한부모 지원 가능

구분	변경	변경 후					
707191	라. 지원기준 ○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및 초·중·고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라. < 左 同 > ○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u>교복비 등 초·중·고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u> 비용 지원			
교육지원		,	: 천원/분기)			,	: 천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9	333	408	지원금액	214	340	417
사례 관리지원	< 신 설 >			위기에 가정 나. 지원 저 국비지원 주록지(기초생) 불가 다. 지원망 일 위기도 결정 - 위의물 의기도 경어 라. 지원금(망취에 라. 지원금(자원방) 지원 등은 저 지원 등은 저 이 지원 등은 저 이 지원 등은 저 이 생계에	당자(사례관리 처하여 지원 제외자 실사업인 '사려원 불가 할수급자 중 법 당자(사례관 도 조사지(기 로 조사지(기 일 보위 액 및 범위 액 및 범위 액 : 연 1회 물품(서비스 기 : 현장 확 능(단, 단순 제외) 법	이 필요하다 예관리사업 (- 생계급여 리사) 등의 서식 제16호) 점 30점 이 문항이 각 원 여부 결건 최대 1,000 오) 구매 후 인 결과 필요 통원진료비와	구영비 지원'과 가구는 지원 현장 확인서 에 의거 지원 상 또는 욕구 3점씩 받은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나. 지원종류 (1) 연료비 ○연료비 지원이 필요 ³ ○ 연료비 지원기준 : (4) 전기요금 (5) 사회복지시설 이용 (6) 사례관리비	90천원		 ○ 연료비 (4) <삭 제 ⇒ 지원형 (5) <삭 제 ⇒ 지원형 (6) <삭 제 	同 > 司 > (장기입 지원기준 : <u>></u> 남목 폐지 <u>></u> 남목 폐지	92천원	차가구 제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사후조사 ※ <u>< 신 설 ></u>	1. < 左 同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차 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및 기초연 금 대상자 중 무한돌봄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자는 사전조사로 대체
	다. 사후조사 시기	다. < 左 同 > - 실직 및 폐업,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유로 지원 받는 20~40대 가구의 경우 취업상황 및 지출 실태 등을 수시 조사하여 부정수급 방지 철저
	라. 사후조사 방법 ○ <u>< 신 설 ></u>	라. < 左 同 > ○ 자료의 제출 요구는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즉시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 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현장확인서 등을 우선 활용
	○ 조사시 필요한 서류 제출요구	○ < 左 同 > -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사후조사	○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 < 左 同 > - 고의적으로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미제출 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 신 설 >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제7항, 제19조) - 사후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신 설 >	○ 보건복지부 『20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및 소득조사, 재산조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준용
	마.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 신 설 >	마. < 左 同 > ○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적정성 판단 -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님. 심의위원회는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현장확인을 통해 인지된 위기상황을 토대로 무한돌봄사업 지원여부 결정 - 초기 판단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허위.거짓 지원을 제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제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소득기준 : 최저 생계비 200% 이하 (단위 : 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최저 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기준중위 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최저 생계비 200%	1,234,562	2,102,096	2,719,376		기준중위 소득80%	1,299,865	2,213,282	2,863,215
	가구원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 생계비	1,668,329	1,976,970	2,285,610		기준중위 소득	4,391,434	5,203,849	6,016,265
	최저 생계비 200%	3,336,658	3,953,940	4,571,220		기준중위 소득80%	3,513,147	4,163,079	4,813,012
	* 7인 이상	상은 1인 증가	시마다 617,2	282원씩 증가	,	※ 7인 이상	은 1인 증가/	시마다 649,93	32원씩 증가
	3. 무한돌봄 의료비 연장 심사 다. 지원연장 결정기한 ○ 1회 지원 후 초과된 의료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시점					3. < 左 同 > 다. < 左 同 >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지체없이 지원연장 여부 결정 (지원 종료 3일전 까지 결정)			
					지체없이 지원연장 여부 결정 (<u>지원 종</u>				하여 분할 한 내에 이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처분의





제1장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개요
1. 근 거 1
2. 추진방침 1
3. 추진경위 1
4. 지원절차 2
제2장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 5
2. 위기상황의 정의 6
3. 지원단위 10
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
1. 생계지원 12
2. 의료지원 13
3. 주거지원 15
3. 주거지원



제4장 사후조사 대상자관리

1. 사후조사 20
2. 적정성 심사 21
3. 무한돌봄 의료비 연장 심사 23
4. 지원종료 결정 24
5.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24
6. 이의신청 26
7. 기 타
제5장 서 식29
제6장 참고사항 ······ 53





제1장 위기가정 무한돌봄1)사업 개요

추진배경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 증가
-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중한 질환자 등의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보호 필요

1) 근 거

- 긴급복지지워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 추진방침

- 현행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타법 우선 지원
- 현장확인을 통한 **"선지원 후심사"** 로 신속성 확보
-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중 필요 시 민간자원 및 사례관리 등 연계
- 본 안내서에 없는 사후조사, 적정성심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20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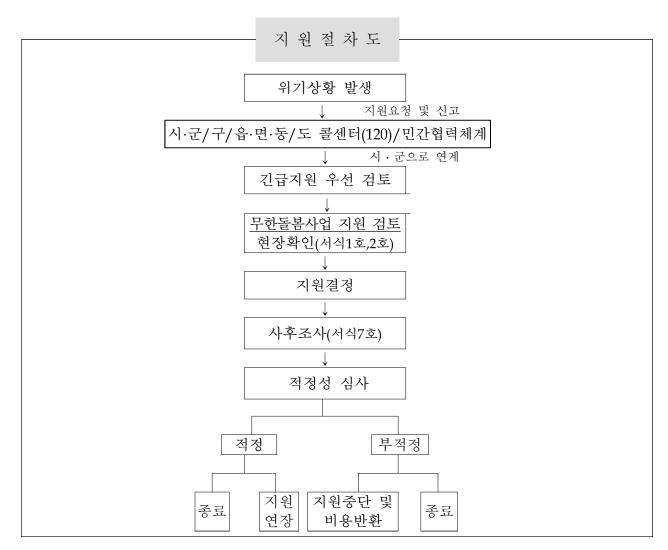
3 추진경위

- 무한돌봄사업 시행 : '08. 11. 1.
- 무한돌봄사업 지침 개정(1~14차) : '09. 1. 7.~ '15. 1. 8.
- 무한돌봄사업 지침개정(15차): '16. 3 1.

¹⁾ 위기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으로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도의 의지 함의



4 지원절차



가.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
- 경기도 콜센터(120)
 - 경기도 콜센터 상담원은 무한돌봄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군 무한돌봄 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시·군/읍면동 무한돌봄 담당공무원



나. 현장확인

- 무한돌봄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자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 결정
- 현장확인 주체
- 시군구/읍면동 무한돌봄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이 대상 가정을 방문 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 현장확인 시기
- 지원요청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콜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확인 실시
- 야간(18시~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신고를 연계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확인 실시
-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에 대한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작성한 현장 확인서를 활용하여 접수, 내용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현장확인 실시

다.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는 무한돌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무한돌봄 지원 결정 실시

라. 사후조사

- 무한돌봄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확보
-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



마. 적정성 심사

-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

바.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적정한 지원임이 사후 발견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현장확인 시 소명 내용과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이 없는 경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 하여 환수 여부 및 규모를 결정



제2장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지원가능 외국인 p.10 각주 참조)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구분	국민기초 생계	국민기초 의료	국민기초 주거	국민기초 교육
신청가능 항목	전항목 지원 불가	생계·사례관리 지원 가능	생계·의료· 사례관리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 사례관리 지원 가능

- 다만,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가능
-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주거가 확인되는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한 노숙인은 지원 가능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로 행려환자 의료급여, 긴급지원 우선연계 실시)



2 위기상황의 정의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사. 그 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1)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자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자
 - (2) 사망
 - (3)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된 자
 - 시장·군수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4) 군입대
 - (5) 구금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1) 의료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u>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u> 으로 치료연장을 위해 이송되는 경우의 요양 및 재활치료비 포함
 - ※ 입원 및 수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
 - (예) 뇌출혈, 뇌경색 등에 따른 입원 수술 후 요양병원 이송 또는 재활과 전환시 500만원 이내 비급여 의료비 지원 가능



- 항암치료 비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연 1회, 1,000천원 범위 내)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의 항암치료비 제외. 단, 암환자 지원을 받아 수술 및 입원비로 모두 사용하여 항암치료비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가능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자의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 포함
- 간병비 최대 700천원 이내 제한 (년 1회, 연장시 재지원 불가)

(2) 생계지워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0~40대의 경우 근로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근로곤란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제14호) 등 서류 첨부
- •생계곤란으로 검사비 및 치료비가 없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할 때 의사소견서로 확인 가능 (○○질환이 의심되어 정밀 검사 필요 등)
-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질병·부상 등으로 금융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 단독가구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 기간이 짧은 경우, 단독가구 및 입원한 자를 포함하여 생계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1) 가구구성워
 -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2)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경우



(3)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4) 가정폭력

- 가구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제출 예) 진단서, 신고 접수증 등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 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경매·공매,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위와 유시한 사유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u>퇴거명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원칙 예) 건물주 확인서 또는 내용 증명서 등 단, 건물주가 확인서 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 관련 증빙자료를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현장</u>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 가능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지원은 불가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자 및 이혼 판결이 완료된 자

바. 실직, 사업의 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 간 근로시간이「고용보험법」제10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 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으로 생계곤란의 경우 지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신고일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휴·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 실직·사업실패 사유의 생계유지 곤란가구 지원제외 >-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실직 불인정
- 1개소 사업자 등록을 휴·폐업 하였으나, 현재 1개소 이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인 휴·폐업자
- 사채업(대부업) 사업등록자

(2) 실직, 사업실패(휴·폐업)자 판단기준 및 관리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직업소개소 기록,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당사자 진술 소득 신고서 등을 통하여 실직 사실 확인
- 사업실패(휴.폐업)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 고용주 연락처 등 실직, 사업실패 입증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단, 신청자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하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직 시 진단서(치료 소요기간 명시) 확인으로 근로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추가지원 결정

사.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 사례에 대해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 지원 가능
 -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은 위기상황 내용에 한정

시장·군수 인정 위기상황의 주요사례(예시)

- <u>3개월 이상 체납으로</u> 단수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기 설치) <u>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 받은 에너지</u> 빈곤 우려 가구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u>6개월 이상 1년 이내에</u>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u>장기간 의도적 체납 가구 제외</u>)
 - 위기 사유가 단전, 단가스, 기타체납의 경우 <u>지원되는 급여로 연체된 공과금을 우선(일부) 해결</u> 하도록 안내, 재지급시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될 경우 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 어려운 경우
- 한부모가족(법률적 이혼기구 포함)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기구원 간병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간병할 수 있는 다른 기구원이 없는 경우)
- 비닐하우스·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1가구) 포함)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병원 퇴원,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 어려운 경우(소득활동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타 생계지원 받지 않은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 기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
 - ※ 현장 확인서 및 위기도 조사지에 의거 지원결정
- 가구원의 갑작스런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가구
- 최소주거면적에 거주하며 최근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임시·일용직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소면적(㎡)	14	26	36	43	46	56

- 구조적(계절적) 요인,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가구
- ※ 소득 감소 및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이전 3개월 평균 소득대비 20% 이상 또는 1인가구 기준 40만원 이상 감소를 의미(일용소득 파악이 곤란한 경우 급여통장사본. 국세청 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확인)

3 지원단위

가. 지원단위

- 가구2)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가구단위 : 생계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사례관리지원
 - 개인단위: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 주급여, 부가급여 지원 병행
 - 주 급 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지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²⁾ 보건복지부 「20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 가구의 범위(p.37~38) 중 아래사항 준용

[•]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③ 외국인의 범위 중 ②, ④항



나. 별도가구 지원

- 위기사유 발생가구로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으나, **별도가구로** 분리하면 지원이 가능한 다음의 가구
- 형제·자매, 친인척, 동거인의 집에 임시 거주하는 자 중
 - 중증장애인, 출소자, 65세이상 노인, 근로무능력자,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예)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한 자가 형제 집에 무료로 임시거주하는 경우 1인가구로 지원가능
- 가구구성원의 학대 및 폭력 등에 의하여 임시거처에서 생활하여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 (예) 친부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모친과 함께 친척집에 임시로 피신한 상태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이 입증 가능한 경우 친부를 제외한 모녀를 별도가구로 구성하여 지원가능



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

1 생계지원

가. 지원대상자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

나. 지원방법

-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위기상황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물품(서비스) 제공 가능

다. 지워기준

(단위 : 천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u>418</u>	<u>712</u>	<u>921</u>	<u>1,131</u>	<u>1,340</u>	<u>1,549</u>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추가시 209천원씩 추가 지급

라.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가능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지원** 가능
- 동일 위기사유로 긴급지원을 지원받고 무한돌봄사업 추가 지원시 맞춤형 물품(서비스)으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물품지원 불가시 예외적으로 생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예) 물품지원 불가 사유를 현장확인서 명확히 기재 후 생활비 내역 및 영수증, 기타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등을 확인 후 지원범위 내에서 생계비 대체 지원 가능
- 동일 위기사유로 긴급지원 6개월 받은 경우 **3개월 추가지원 불가**
 - ※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 지원기간의 합이 9개월을 넘지 않도록 함

〈 생계비 지원기간(횟수)의 제한〉

위기상황 중 (바)항 실직 및 사업실패(휴·폐업)로 인한 소득상실, (사)항 시장·군수인정 위기사유로 인한 지원은 지원종료 시점 1년 경과 후 동일사유로 재지원 가능하며, 총 3회를(2015년 지원부터 적용) 초과한 반복지원 불가

(예) '15.3 ~ 5월 지원대상자의 경우, '16.6월 이후 지원 가능



마. 생계비 지급일

- 신규 대상자 지원 : 지원결정 즉시 지급
-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 지급
- ※ 최초 지급 후(결정일), 익월 부터는 매월 20일 일괄 지급 가능
- 거주지 변경 시 지원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 거주지 시장·군수 지원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전 거주지 시장·군수 지원

2 의료지원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 ※ 본인부담능력자(통장 잔고 등) 30만원 이하 소액의료비 지원 제외 단, 항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소액의료비 지원 제한 해당없음
- 질병사유가 같을 경우(동일질병) 지원종료 시점 1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예) '15. 7월 지원결정 후 퇴원했을 경우 '16. 8월 이후 지원신청 가능
 - •동일질병 치료 후 재활. 요양병원 재 입소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 (예) '16.8월 최초 입원 및 요양병원 이송에 따른 치료비 지원 가능하나. 동일질병으로 '17. 9월 이후 재지원시에는 요양병원 치료비는 지원불가

나. 지원방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 지급
-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간병인 파견기관에게 소요된 비용 지급
- 파견기관으로 부터 경력증명서, 영수증(청구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징구. 불가피하게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경력증명서, 간병인 활동일지 및 내역서(서식 제15호). 통장사본 등을 징구



다. 지원금액 및 범위

- (1) 지워금액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 의료비 지원액수가 초과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종료 3일 이전에 **"무한돌봄** 연장심의위원회"(사전심의 원칙. 불가피한 경우 지원연장 결정 후 1개월 이내 사후 심의)를 통하여 연장 지원여부를 500만원 이내에서 결정
 - ※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음
 - 긴급지원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시 미지원 되는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항암치료비 : **년 1회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 부담금 항목 지원
- 연장지원 불가, 총 3회 지원 시 재지원 불가
- 보건소 암환자 지원 대상자는 제외 원칙이나. 수술 및 입원비로 모두 사용하여 항암치료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병비 : 중한질병으로 **입원기간 중 발생한 유료간병비** 지원
- 10일 이내 최대 700천원 (년 1회, 의료비 지원 연장시 재지원 불가)
- ※ 간병비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의료비를 집행할 수 없음에 유의

(2) 지원범위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지원요청을 해야 지원 가능
 - ※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지원 불가
-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치료연장을 위해 이송 되는 경우의 요양 및 재활치료비 포함
 - ※ 의료비 지원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각종 정부지원 제도 및 민간 지원 및 사보험 가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만** 지원
- 생명의 유지와 관련이 없으나. 의료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급 병실 이용료. 선택적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진단서 등에 불가피한 사유 명시된 경우 상급병실은 3일 이내 지원 가능)



- 수술 및 입원비 지원대상 제외 : 치과, 안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등 (재활 치료비는 입원 및 수술과 연계시 지원 가능)
 - ※ 만성질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2조 참고
 - ※ 단, 만성질환, 항암치료 환자 중 갑자기 <u>증상이</u>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진단서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라. 기타사항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의료원 외국인 진료사업 우선 활용 후 지원
-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치료·관리 할 수 있도록 연계
-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비용이 150만원 이상 등 과다하게 청구되어 진료비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또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심사를 요청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함.
 - ※ 긴급지원의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참고 (긴급지원사업안내 46p)
-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 의료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6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 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 선택 가능

3 주거지원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한 주거불능 상태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는 「**재해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방법

- 시·군에서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거 (개인가정 위탁,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를 확보하여 제공
- **거소 확보 곤란 시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한돌봄 대상자 에게 직접 지급



- 경매 및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보증금 마련이 불가피한 대상자의 임대 보증금 일부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
 - 지원금액 : 200만원 한도 (1회 이상 지원 불가)
 - 무한돌봄 성금을 우선 활용하여 지원 실시
 - ※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연계된 유사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지원 제외
 - 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액이 필요금액 이상인 자는 지원제외
 - 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임대계약서, 임대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임대 계약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 일체 제출

다. 지원기준

(단위: 천원/월)

지	_ 역	가구=	구성원수	1~2 인	3~4인	5~6인
	대	도	Л	<u>374</u>	<u>621</u>	<u>820</u>
	중	소 도	И	<u>245</u>	<u>408</u>	<u>538</u>
	보	증	山	가구별 2,000 한도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추가시마다 대도시 99천원, 중소도시 64천원씩 추가

라.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가능 (보증금은 1회만 지원)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9개월 지원 가능
- ※ 3개월 지원단위이나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위기상황 종료 시 즉시 지원 중지

마. 지 급 일 : 생계비 지급과 동일

바. 기 타

- 공공임대주택(LH 등) 체납금 및 보증금 등의 지원은 불가
- 보증금 지원 후 당월 임대료 지원은 불가 (익월부터 지원 검토 가능)
- 6개월 이내 전출 또는 미거주 확인시 환수조치 (단,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제외 가능)



4 교육지원

가. 지원대상자

-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나. 지원제외자

-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타 교육지원을 받는 자
- 단, 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교육지원비 대상자는 지원 가능

다. 지원방법

- 무한돌봄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한도 범위 내 영수증 금액)
- 수업료·입학금은 지원 대상자의 학교 계좌로 납입 지원

라. 지워기준

○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단위: 천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4	340	 417천원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신입생(4분기 지원대상) /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마.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1회

- 생계비 추가지원 가구에 한하여 **1회 추가지원** 가능
- 분기 구분

-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5 사례관리지원

가. 지원대상자

○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나. 지워 제외자

- 국비지원사업인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가구는 지원 불가

다. 지원방법

-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서 및 위기도 조사지(서식 제16호)에 의거 지원결정
 - 위기도 조사지 총점 30점 이상 또는 욕구 영역별 2개 이상 문항이 각 3점씩 받은 가정에 한하여 지원 여부 결정

라. 지원금액 및 범위

- 지원금액 : 연 1회 최대 1.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 지원범위 :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가능
 -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마. 지원방법

- 생계에 필요한 비용은 맞춤형 물품(서비스)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제공
 - 단. 물품지원 불가시 예외적으로 생계에 소요되는 비용 현금지원 가능하나. 지원금액은 가구별 생계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예) 물품지원 불가 사유를 현장확인서에 명확히 기재 후 생활비 내역 및 영수증. 기타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확인 후 현금지급 가능, 1인 가구로 418천원 지원 후 생활여건 상 필요한 가전기구 582천원 이내까지 구매지원 가능
- 의료·주거·기타 비용 등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예) 위기가구에 대한 집수리, 필요 주거시설물 설치, 알콜의존·정신질환자 등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기타 진단비, 검사비, 심리치료비 등은 해당기관에 직접 지급



6 시장 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가. 지원대상자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를 지원 받는 가구 중** 시장·군수가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나. 지원종류

(1) 연료비 :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장기입원, 무료임차가구 제외)

○ 지원방법 : 생계지원과 동일

○ 지원기간 : 동절기(10~3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 지원기준 : 월 92천원

(2) 해산비 :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

○ 지원방법 : 생계지원과 동일

○ 지원횟수: 1회

○ 지원기준 : 1,000천원

※ 주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해산한 경우만 지원

(3) 장제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방법 : 생계지원과 동일(장제를 실제 행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지워횟수 : 1회

○ 지원기준 : 1,000천원

※ 주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만 지원

-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지원방법, 지원기간 및 현장확인은 생계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하되 지원기간은 추가되는 항목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내로 정함
 - 지원기준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분야의 평균 비용으로 결정
 -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먼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은 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급할 경우에는 먼저 지원한 후에 심의를 받을 수 있음



제4장 시후조사 - 대상자관리

1 사후조사

가. 사후조사의 목적

- 무한돌봄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확보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차상위) 및 기초 연금 대상자 중 무한돌봄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자는 사전조사로 대체

나. 사후조사 주체

○ 시군구/읍면동 무한돌봄담당 공무원

다. 사후조사 시기

- 무한돌봄사업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
- 실직 및 폐업.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유로 지원받는 20~40대 가구의 경우 취업상황 및 지출실태 등을 수시 조사하여 부정수급 방지 철저
- 금융재산은 1개월 이내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지원의 적정성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조사 보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

라. 사후조사 방법

- 소득 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 자료의 제출 요구는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에서 즉시 제출가능 한 수준으로 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현장확인서 등을 우선 활용
- 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요구
- 가구원 확인: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 행방불명 신고접수증 등
- 소득, 취업·퇴직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3),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³⁾ 제5호 서식



- 사업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휴·폐업 확인서 등
-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사본,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기타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납입고지서. 월세 지출 (임대차 확인서), 소득신고서4),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경력증명서, 급여 통장사본, 국세청 소득 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출근부, 출소증명서 등
-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 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관련 사항을 사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 적정성 심사에 제출
- 고의적으로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미제출 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제7항, 제19조)
- 사후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건복지부 『20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및 소득 조사, 재산조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준용

2 적정성 심사

가. 적정성 심사의 목적

○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 심사

나. 적정성 심사 기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등
- 시군의 실정에 맞는 심사위원회를 적정성 심사기구로 지정

⁴⁾ 제6호 서식



- 위원수가 10인을 초과 할 경우 가급적 10인 이내로 무한돌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존 분과 위원회 중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를 지정 · 운영 할 수 있음

다. 적정성 심사 대상

-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한 항목 모두
- 단. 무한돌봄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 금융재산 등 기준은 차이가 있으므로 '무한돌봄사업' 기준 적용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득·재산기준을 명확히 충족한 자는 심의 위원회에 사후조사 결과 보고 및 승인으로 심의
- 위원회 심사 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무한돌봄 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라. 적정성 심사 시기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마.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적정성 판단
-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님. 심의위원회는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현장확인을 통해 인지된 위기상황을 판단하여 무한돌봄 지원여부 결정
- 초기 판단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허위·거짓 지원을 제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 제외
- * (예)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지원조건으로 금품 수수, 신청자가 고의로 소득·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또는 타인에게 지원한 경우 등
- * (예)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 7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649,932원씩 증가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부채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6개월간의 평균 잔액 (긴급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등 공적자료 활용)
- 금융재산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재산 제외 항목(재산에 포함)
 -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가, 지자체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형성된 금융재산 (예) 희망키움통장, 디딤돌씨앗통장, 청년통장 등
- 위기상황 발생 및 현장확인을 통한 개별가구의 생계곤란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3) 무한돌봄 의료비 연장 심사

- 가. 연장 심사의 목적
 -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액수가 초과된 신청자의 연장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
- 나. 연장 심사 기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등
 - 시·군의 실정에 맞게 운영에 적합한 심사위원회를 선정



다. 지원연장 결정기한

○ 1회 지원 후 초과된 의료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연장 여부 결정 (지원 종료 3일전 까지 결정)

라. 심사 완료 시기

- 지원연장 결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 완료
 - ※ 불가피한 경우 사후 심사(지원연장 결정 후 1개월 이내)

4 지원종료 결정

- 시·군/읍면동 공무원 또는 긴급지원심의원회 등의 위원이 지원기간 중 위기상황 해소 여부 판단. 정기적으로 무한돌봄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
- 생계·주거·교육지원 등 3개월 1회∼3회 확인하여 위기상황 해소 여부 판단
- 위기상황이 해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종료 시점 결정
- · 질병·부상의 회복, 취업여부, 주소득자의 복귀, 거주 주택마련, 출산 경과, 재혼 등 위기해소 상태 및 해소를 위한 노력 의지와 다른 지원 제도로 전환 필요 등을 판단하여 지원종료 시점 결정
- 매월 급여지급 전 인적변동사항 확인
- 사망, 타 시도 전출 등의 경우 지원종료 결정 및 필요 시 환수조치

5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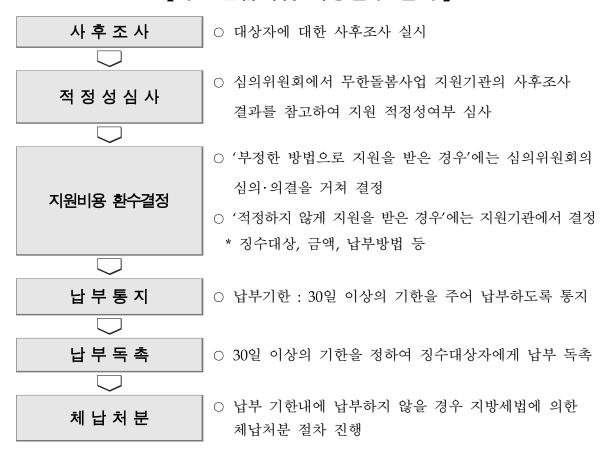
가. 지워비용 화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 사실 및 소득, 본인 소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 부적정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과오 지원을 받은 경우
- 판정 및 환수 결정 : 시장·군수
- 환수 금액 :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현장확인 시 소명 내용과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이 없는 경우나.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수 여부 및 규모 결정



나.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무한돌봄사업 비용환수 절차】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 ※ 시장·군수의 반환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 의한 이의신청제도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무한돌봄 지원기관은 지원비용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가능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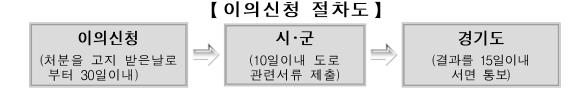


6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시장·군수의 지원결정내용(연장결정 포함)
 - 시장·군수의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 이의신청인
 - 지원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 지원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 이의신청 기한
 -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지원요청결과 통보일, 연장결정 통보일 및 비용 반환 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장·군수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 이의신청 절차
 -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서식 제10호)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ㆍ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해당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복명서 작성



- 관계공무원은 현장조사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 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기관에 서면 통지



フ)기 타

- 위기상황의 판단, 적정성 심사 등 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전문가적 역량과 판단에 따라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고 판단 될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문책하지 않음
- 무한돌봄 지원대상자의 도내 전·출입 시에는 전출 시·군에서 전입 시·군으로 서면 통보
- 도/시·군/읍면동 업무 분담(예)

도	시·군	읍·면·동
· 계획수립 · 홍 보 · 평 가	· 상담·안내, 신청·접수 ·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 지원대상 사후조사 · 지원의 적정성 심사	· 상담·안내, 신청·접수 · 현장확인 · 지원대상 사후조사

- ※ 시·군 /읍·면·동의 업무 분담은 시·군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 상담 안내 대장 작성 및 비치
 - 시군구/읍면동별로 비치하고 시·군에서 지원실적을 도에 제출 시 상담· 안내 건수 작성 근거 자료로 활용
- 무한돌봄 지원실적 제출 : 매월 5일까지 해당서식으로 공문 제출

제5장 서 식





[서식 1호 - 신규 신청일 경우 긴급지원 우선 조사]

		치 기	. ടി റി	נג		처리	기간
		언 생	· 확 인	<u>^</u>		기체	없이
지원요청 또는	성 명		생1	견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신고인	주 소				(전호	斗:)
위기발생 사유							
	가구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미동거사		직업 월소득	비고
긴급지원							
대상자							
	건축물/주택	네 □건축물	물(원)	 주택(원)		
	토 지	□ 논(원) 🗌 밭	(원)	□ 임야(원)	□기타(원)
	선 박	□선박	대 (원)			
재	자동차	□평가역) □ 차량번호(장애인용, 자가용,		
산	ما ما با عام	U 배기령		· · ·			*
사	임차보증금		세보증금(<u> </u>	□기타(원	<u></u>
항	금융재산		금 · 적금(수표 · 어음등(원) □ 저축성 원)	J·보장성보험(□ 청약저축·주택청익	, ,	원) 원)
	동 산	□소(□종묘·			기타가축(원) 기구류(원)	,	원) 원)
	부 채	□ 임대5	보증금(원) 🗌 일반	부채(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비용의 약	일부 또는 전 네에 기재한 니 인합니다.	부를 반환할 <i>=</i> H용이 틀림없음	수 있습니다. 을 확인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결만일 이와 다를시 형	령사상, 민사상 불	이익을 감수할
		또는	위 사항을 그	긴급지· 고지한 긴급	원대상자 : 지원담당 :	(서명 (서명	형 또는 인) 형 또는 인)

무한돌봄신청서 및 현장확인서							처리기간 지체 없이	
w) () () =)	성 명		생년숙	2] 0]		대상기	자와의	
지원요청 또는			~ 생선 *	면 건			:계	
신고인	주 소				(전호)
위기발생 사유		원으로부터 사와 이혼	출, 행불, 군입대 의 방임·유기·가정 상황(□ 중한 질병 및□ 화재, 경매・□ 실직 또는 /□ 기타(공매 등으	으로 인한	
	가구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무 <u>한돌봄</u> 대상자								
	건축물/주택	□기호민		 スポ/	617			
			<u> </u>	□ 주택(원)	\	-17	6)/
	토 지	□ 논(원) □밭(원) 🗆	임야(천) □기E	각 (원)
 재	선 박 	□ 선박	대 (원)				
산	자동차	□ 평가의) □ 차량번호(ዘ인용, 자가용, 5 			()
사	임차보증금	□ 전·월/	세보증금(원) □ 상가보증	중금(원)	□기타(원)
항	금융재산		금·적금(수표·어 음등 (원) □저축성·5 원) □	보장성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원) 🗌 냐종합저축		원) 원)
	동 산	□ 소(□ 종묘·	원) □돼지(임목(원)		타가축(원 구류(원)		•	원) 원)
	부 채	□ 임대보	L증금(유	원) □일반부	채(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원을 중단 동 요청서	하고 지원 에 기재힌	세도 심의위원회 비용의 일부 또 난 내용이 틀림(을 확인합니다.	는 전부를 변 없음을 확인	! 환할 수 있습	니다.		
				무한돌봄대/	상자:		_(서명 5	또는 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와 00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뒷 면)

							1
현장확인							
내 용							
					년 □ 교육 	├지원 □ 사례 	관리지원
	□지원필요		- 추가지원 결 ²				
		□ 연료비 □] 해산비 □장 	제비 🗆 기티)	
		□ 국민기초생활			급복지지원		
		□ 차상위본인부 □ 대한적십자/			무모가족지원 회복지공동모:	금회	
	□ 타지원연계	□ 지자체(시군) 자체 지원사업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 기타(※ 타 국가지원	우선 지원 후 무) 한돌봄사업 지원·	실시		
		□ 위기상황 비행]재산 □금융재	사)
	□ 지원 불 필요	□ 동일사유로 >		□ 사원기군도 □ 타지원 연계		ଧମାପ ∟ ⊟ ଅମା	ت)
		□기타()			
지원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부		
	위와 같이 무한돌	·봄요청 및 신고여	에 대하여 현장	-을 확인하였습	니다.		
			년 월	일			
			무한돌	봄담당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서식 3호]

무한돌봄대상자		□ 해산 ⁻L		ı .	ᅵᅯᅵ		
	인물감대성/	√ □ 장제		<u> </u>	!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무한 돌봄 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해산자	주 소						
	해 산 (예 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사산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성 명		생년월일	<u>]</u>			
전기요금 신청자	주 소						
	고 지 서 발급기관명			신청	성금액		
	무한돌봄대상	자로서 (해산비, 장 년	제비, 전기요 월 Q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인:		(서명 및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해산비 신청자 - 출생증명서 1부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구 비 ※ 즈미드로사 출재시고가 되어 이후면 그비서로 얻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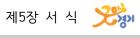
[서식 4호]

		무 한 돌 봄	비용	용 청-	구 서			
무한돌봄	성 명			생년월약	길			
대 상 자	주 소					(전화:)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	록번호		
의료지원	요양기호	상 ¹ 코 <u>-</u>		질병명			보장 유형	
-132/16	의료기관주소			·		(전화:	·)
	진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スココ이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등	록번호		
주거지원· 사례관리	사업장주소			1		(전화:)
지원	거주(이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교육지원	학 교 명		대표자 (학교장)			사 업 자 등록번호		
(수업료・	학교주소				(2	전화:)
입학금 등)	대상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자등	록번호		
연료비 지원	업소주소				(전화:)
	제공연료 및 수량	□ 연탄 (- 2	왕) 🗆 등	두유 (l)	□ 경유	(l)	□ 기타 (l)
청	구 금 액	그			원 (₩)	
감 (의료기	면 금 액 관에서만 작성)	금		원 (₩)	감면률	%
금	융기관명		계좌번호	-		예금주		
Ç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지원에 소요된	년 비용을	상기와 같	이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무 한 돌 봄 대 상	자		성 명	(서	명)		
무한돌봄비용청구자 기관(상호) 명 대 표 자 (서명)								
				시장	·군수 귀	리하		
	그 밖의 부정한		1원을 빋		·	•	지원받은	비용을
	시 반환하여야 합니 , 기 공통사학	-1나. 항 : 영수증(세금계ረ	 난서), 계조	 ት사본, 사업	자등록증시	 }본 각 1부	-	
구비서류	-	·출내역서, 수업료·						



[서식 5호]

	고 용·임 금 확 인 서								
	성 명			생년·	월일				
피 고	주 소								
용 자	고 용 성 격 (피고용가 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 일 까지			
			1 일 임 급	금 :		원			
		일당제	월평균 고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분	월분	월분		
	임 금 지 급 형 태		7]	본 급					
		월급제	각 종	각종 수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겨	레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미 가	임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	 이 본 사업	 장에 고용되	티어 있음을 확	인합니다.				
		1	년 -	월 일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旨	날인)				
※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9	한 방법으				ll게는 지체 Q	것이 지원을		



[서식 6호]

	무형	한돌봄대상자 소득신고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네 ' 상 ^ 다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일 당 제	1일임금 월평균 근로일수 :	원 일		
월 소 득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이전 소득일 경우 지원하는 곳 :	원)		
	본인은	·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약	길		
		신고자 :	(인)		
시장·군수귀하					
거짓이나		}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여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세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서식 7호] (앞 면)

		무	한돌봄대상자	사후	조사 보고	서		
	대 상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위기발생 사 유	□ 가구구/ □ 주 소득	자의 사망, 가출, 행불 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 두자와 이혼 -수 인정 위기상황(역·성폭력 □ : □ ·	화재, 경미	병 또는 부상 배·공매 등으로 는 사업실패(! 인한 주거곤란
	지원종류				지원내용			
무한돌봄	무한돌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대 상 자	가구주 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미동거사			직 업	월소득
-								
	25919.0			→ w(41)			
	건축물/주택	□ 건축물(원) 🗀	주택(원)			
	토 지	□ 논(원) 🗌 밭(원) 🗌 임이	원)	□기타(원])
	선 박	□선박	대 (원)				
재 산	자 동 차	□평가액(□배기량()
사	임차보증금	□ 전·월세	보증금(원) [□ 상가보증	금(원)	미기티)(원))
ঠ	금융재산		· 적금(원) [표·어음등(□ 저축성보 원)	험(원) 🗌 주스](원))
	동 산	□ 소(□ 종묘 · 약		원) 기계・기구	□ 기타가 ·류(원)			원)
	부 채	□ 임대보증	·금(원) 🗆	일반부채(원)			



(뒷 면)

	소 득	※ 판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 이하			
무한돌봄 적 정 성 판단자료	재 산	※ 판단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판단기준 : 500만원 이하			
	지원연장, 변경 및 중지	□ 지원연장 □ 지원변경 □ 지원중지			
사후조사 결 과	담 당 자 의 견	 ** 현장확인시 위기상황, 지원의 필요성, 가구원의 특성과 소득·재산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의견 기술 			
٤	위와 같이 무한돌	봄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 명 (서명)			
		확 인 자 직 위 성 명 (서명)			
İ					
	시·군 무한돌봄심의위원회 귀하				



[서식 8호]

	무한돌봄대상자 [□지원요청결과] 통보서					
지원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 무한돌봄	요청자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적합	지원안내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후조사결과 에 따라 지원이 중지(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		의료지원 결정통보서 발급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까지(입원일 기준)입니다.				
			의료지원 결정 대상자가 동 통보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진료비용을 청구하여야 비용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적합사유				
원 결 정 내	□지 원 부적합	지원부적합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무한 돌봄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u>a</u>	T711	아 내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무한돌봄 기준에 적합할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무한돌	봄대상자				
		변경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 지원변경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 │ □ 지원중지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연장 및 중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コ 从一記 つ) 교계도시 1				
			년 월 일			
		를 -	담 당 자 : - - - - - - -			
		e				
			시장·군수 (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와 00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식 9호]

7] 관 명

수신자 (경 유)

무한돌봄 반환비용 납부통지 제 목

- 1.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침에 의거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다음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무한돌봄	성	명		생년월일	
대 상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지원비용	주	소			전화번호
납부자	무 한 대상지 관	돌 봄 - 와의 계	□ 본 인	□ 기 타 ()
납 부 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 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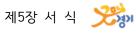
시장·군수(인)

담당자 ○○() 과장	000					
협조자 ○○(\supset						
시행 〇〇〇5	라-〇〇						
우 000-0	00	주소	1	홈페이지	.]		
전화	전송		/ e-mail	주소	1	/공개•비	공개여부



[서식 10호]

		ΛΙ	ΟI	۱.	ᅯ᠘	ı						Ž	처리기	간
		ΟI	긔	신	∂' ^	1						1	별도안	H
7] =] O]	성 명							생년	1월일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	ই :	:)
(처분통] 있음을 안 연 -지를 받은 경· 1 받은 연월일	우에는					년	월		일				
통	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	수 	수	豆	
위와 같	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없		유	
		년	월	ō	<u>]</u>									
					신청인			(사	명	또는 인	<u>]</u>)			
		도기	시사·	시장·급	군수(시	장∙군	수 경유) 귀히	}					



[서식 11호]

2016. 무한돌봄사업 지원실적

1, 무한돌봄 지원실적 보고

77	문의	신청	결정	10.035	<u>·</u> 총계 B+C+D			생계비	(A)	의료	FA](B)		주가]비(C)	사	계관리비](D)	시장군	수 추가	지원 (E)
구분	가	가구	가구	가구	건수	금액 (원)	가구	건수	금액 (원)	가구	건수	금액 (원)	가구	건수	금액 (원)	가구	건수	금액 (원)	가구	건수	금액 (원)
전 월												72/19			10000			7270			
누계					h												8 8				
당월																					
실적																					
누계							7														

2. 무한돌봄 지원결정 사유

시군명 7	4 7			O 후보면만 U 보	(라) 화재, 자연재해,경매-공매	(마) 주소득자와	상실하여 생계	패(휴·폐업)로 소득을 가 곤란하게 된 때	(사) 그 밖에 시 위기삼황이라고	205 4
71 8 V	흥계 가+나+다+라 +마+바+사)	사망가들, 행불,구금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줌한질병또는 부상을당한때	(다)가구구성원 으로부터방임유 기,화대,가정폭 력성폭력등물당 한때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때	이후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①실직으로 소득물상실하여 생계가곤란하게 된때	(바)-②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모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① 현장확인물 통해 위기에 처하여 지원 판단한 경우	(사)-③ 그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3. 생계비 지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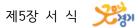
				전체생계	비 지원분석			
시군명	*	갱계비	중위소득	- 50%이하	중위소득 5	1%~75%이하	중위소득 7	6%~80%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서식 12호] 지원대장

무한돌봄대상자 접수 및 지원 대장

970 200	연번	시군	거주 읍 동	성명	변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성별	가구 원수	휴대폰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접수일	현장 확인일 자	신청사유	결정일	적합 여부
	1														I
	2														
	3														
	4														
	5														
	6														
	7														
	8														
	9														
	10														



[서식 13호]

무한돌봄 상담 · 안내 대장

번호	상담일자	성	명	거주 읍·면·동	연락처	상담내용	신청연계 여부(0,X)	비고

※ 「비고」란에 상담자 성명 기재



[서식 14호]

근로곤란자(양육, 간병 보호) 사실조사확인서

※ 확인결과 어느 하나 이상의 "N"인 경우 근로가능으로 판단

O 조사대상					
세대	내 주	근로곤란자	양육/간병/보호	대상지	}
O 조사내용					
구분		확인 사항		Y	N
	1. 판정대상 기	- 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양육	을 하고 있다		
미취학자녀	2. 양육할 수 🤉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양육	3. 보육료(유아	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		
	4.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① 스스로 선 ② 스스로 선 ③ 실내에서 ④ 치매, 정 호가 필요 ⑤ 질병·부	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식사가 불가능하다. 용변이 불가능하다. 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의 요하다. 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의 돌봄이 필요하다.	으로 인하여 상시보		
가구원	2. 간병·보호힐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	다.		
간병·보호	스, 요양보험※ 서비스제공간이 단축이 치매, 정신점	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고 있 당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선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으로 된 일환 등 인지능력결함자와 타 점	있다. 1택에 따라 서비스 시 간주 일환의 중증장애인(「장		
		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3 -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	,		
		' 필요한 시가 있을 경구에는 / 이 "Y"로 체크	기커트까지마스 구에어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	및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를 가구원은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있는	가구원을	의미함
(조사대상자명)에	대하여 위외	- 같이 조사	를 실시한 점	결과 근로기	가 (□곤란	□가능)함을	- 확인힙	니다.

20			
40	•	•	•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또는	(서명 또는 인
----------------------	----------

간병인 활동일지 및 내역서

간병 보호 디	대상자명 	간병 보호 대상지	- 생년월일	간병 보호 대	상자 확인
		년 월	일		(인)
○ 활동내용				I	
일자		간병 주요 내용			활동장소
				(의료기	관명/호실)
1				· ·	
지 간병인 급 성명	간병비 청구액	금융기관명	7-	ll 좌번호	비고 (사유)
계 좌	원				
상기	간병활동 내	용에 대해 성	 실히 이형		
		도 서비스에 대			다.
		기기기		/	1.
		간병인	:	(¿	<u>!)</u>
	시장 군수	: 귀하			
추가 제출 서류	- 가병인 경력	증명서 통장사	 로, 신분증	등	



[서식 16호]

사례관리지원 위기도 조사지

※ 총점 30점 이상 또는 욕구 영역별 2개 이상 문항이 각 3점 이상인 가정에 한하여 지원 여부 검토

				접수번호		
위기도 조사지			현장확인 일시			
	(Risk A	ssessment	(,)	사례관리담당자(업무 담당자)		
(Rion Hoocooment)		정보제공자명(관계)				
대상자명		대상자연락처		정보제공자 연락처		
욕구영역		총점		위기여부 (2개 문항이 각 3점인 경우)	□해당	□비해당

1. 안전: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상의 위기정도 (12점)

1. 안전	위기도 문항	0	1	2	3
가족 내 안전유지	1.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①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2. 본인이 가족(비동거 가족포함)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3. 비동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학교, 직장 등) 등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①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기족 외부로 부터의 안전유지	 4.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도움을 요청할 지원체계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는 있으나,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3)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 /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 한다. 				



2. 건강 :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생활상의 위기정도(18점)

2. 건강	위기도 문항	0	1	2	3
신체적 건강유지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일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3)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전혀 안 된다.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2)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정신적 건강유지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은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4.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관리가 어렵다. ①질병인식(병식)이 없다 ②증상관리를 도와 줄 자원이 없다 ③증상관리가 안 되고 있다 ④ 자해나 타해의 시도나 위험이 있다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3점. 5.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약물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약물을 처방대로 복용하고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약물 복용을 도와주는 지원 체계가 있지만,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어렵다. 2) 약물 복용을 도와주는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규칙적인 약물복용이 어렵다. 3) 약물 복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약물 치료를 거부한다. 6.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해당사항 없음. 1)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2) 자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3)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3. 일상생활유지 : 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유지상의 위기정도(9점)

3. 일상 생활 유지	위기도 문항	0	1	2	3
	1.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식사 ②대소변 등 용변처리 ③옷 입기(세탁포함) ④세수, 목욕 등 몸씻기 ⑤청소 ⑥정리정돈 ⑦수면 ⑥그 외 가사활동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영유아인 경우 1, 2, 7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3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불편하지만 외출이 가능하다. 2) 외부(자원)의 도움이 있으면 외출이 가능하다. 3) 이용할 만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할 수 없다 / 도움이 있어도 외출이 어렵다.				
여기생활 활용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여가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자원은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2) 자원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3) 즐겨하는 일이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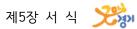


4. 가족관계: 가족구성원의 갈등 및 보육, 간병 등의 돌봄보호상의 위기정도(9점)

4.가족관계	위기도 문항	0	1	2	3
관계형성	1.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전혀 없다. (연락하고 사는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2.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가족갈등이 있으나 가구원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전혀 안 된다.				
가족 돌봄	3.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0) 돌볼 가구원이 없다 /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돌볼 능력이 부족하나 의지가 있다. 2) 돌볼 능력이 부족하며,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돌볼 능력이 부족하며,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 돌볼 의지가 없다.				

5. 사회관계: 친지, 이웃 및 소속집단 내에서의 관계형성 및 유지상의 위기정도(12점)

5. 사회적 관계	위기도 문항	0	1	2	3
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다(연락하고 사는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다(연락하고 사는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이 전혀 없다. 				
	 보인이나 동거 가족이 자기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소수의 타인(가족 포함)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만,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접촉이 없다.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접촉이 없다. 				
	4.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으로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0) 유발하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유발하고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3) 유발하고 있다.				



6. 경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위기정도(9점)

6. 경제	위기도 문항	0	1	2	3
기초 생활해결	1.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돈이 없어 식사를 못하고 있거나 식료품 구입이 어렵다. ②공교육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③계절에 맞는 의복과 신발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④치료비가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을 못 가고 있다. ⑤집세가 3개월 이상 밀려있다. ⑥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퇴거위험, 노숙,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쉼터 등). ①난방장치가 없거나,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⑧공과금(사회보험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중 하나 이상)이 밀려 있다. ⑨공과금 연체로 사회보험급여 자격정지, 전화중단, 가스차단, 단수, 단전 중 하나 이상의 상태에 있다.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자산관리	2.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도움이 있을 경우 금전관리가 가능하다. 2)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3) 금전관리 자체가 어렵다(개인 역량부족, 건강, 장애, 기타 사유). 3. 빚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빚은 있으나 갚아 나가고 있다. 2)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빚을 내고 있다. 3)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받고 있다.				

7. 교육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상의 위기정도(6점)

7. 교육	위기도 문항	0	1	2	3
기초학습 습득 및 향상	1. 본인이나 자녀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능력이 부족하다. ①듣기 ②읽기 ③쓰기 ④말하기 ⑤다른 사람의 말 이해하기 ⑥신문, 글 등을 이해하기 ⑦간단한 계산하기 ①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 현재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환경	2.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등교는 하지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2) 등교는 하지만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위반(무단이탈, 무단지각, 무단조퇴)하거나 징계(정학, 사회봉사 등)를 받고 있다. 3) 등교는 하지만 다른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거나, 다른 학생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 / 무단으로 결석하고 있다.				
개선	3.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의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거리, 비용 등의 이유). 2)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검정고시포함) 특기를 개발하거나 학업을 유지하려는데 자원이 부족하다. 3) 학업을 유지하려는 의지나 대안이 없다 / 현재 의무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8. 고용:취업·창업상 문제 및 직업기능 수행상의 위기정도(6점)

8. 고용	위기도 문항	0	1	2	3
취(창)업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근로능력은 부족하나 일할 의지가 있다. 2)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족돌봄, 자녀양육, 일자리 발굴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 3) 근로능력도 부족하고 가족돌봄, 자녀양육, 일자리 발굴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 / 일할 의지가 없다.				
고용 유지	2.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개인적인 방해요소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언제든지 정리 해고될 수 있다.				

9. 생활환경: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보장상의 위기정도(12점)

9. 생활환경	위기도 문항	0	1	2	3
주거내부 환경개선과 안전	1.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거주하는 집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①화장실 ②주방시설 ③도배장판 ④전기시설 ⑤가스시설 ⑥상하수도시설 ①냉난방시설 ⑧위생상태(곰팡이, 찌든 때, 방역불량, 배설물처리 불량, 쓰레 기 등) ⑨창호/문짝 ⑩주변 환경 ⑪채광				
20/10/100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주거내부 환경개선과 안전	2. 거주하는 집에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히터나 전기장판 과열 ②전기선 누출 ③누수 ④가스누출 ⑤베란다 안전장치 미비 ⑥방범장치 미비 ⑦침수 ⑧붕괴위험 ⑨그 외 기타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이 있으나 임시방편을 마련하였다. 2) 어려움이 있으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3) 어려움이 있으나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				
	3. 거주하는 집에서 신체활동상에 어려움이 있다. ①공간부족(휠체어 이동공간부족) ②문턱 ③안전바 미설치 ④싱크, 찬장, 가구 등 높낮이 미조절 ⑤욕실 미개조 ⑥램프미설치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주거 내·외부 환경과 지역사회	4. 주거 내·외부 환경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0) 유발하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유발하고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3) 유발하고 있다.				



10. 법률 및 권익보장: 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상의 위기정도(6점)

10. 법률 및 권익보장	위기도 문항	0	1	2	3
권익보장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0)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옹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있다. 2)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옹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옹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				
법률적 지원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이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법적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법적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제6장 참고사항



1 무한돌봄사업 담당자 현황

기관명	실과명	팀 명	전화번호
7177	무한돌봄복지과	무한돌봄팀	8008-2427
경기도청	사회복지담당관	사회복지팀	8030-3153
수원시청	사회 복 지과	휴먼복지지원팀	228-2489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무한돌봄팀	729-2834
부천시청	복지운영과	무한돌봄팀	032-625-4111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324-2657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팀	481-3023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팀	8045-5455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8024-3072
시흥시청	주민생활과	서비스연계팀	310-3564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369-2216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02-2680-6514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390-0647
광주시청	희망나눔과	무한돌봄팀	760-5956
김포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980-2633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645-3533
안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센터팀	678-5432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무한돌봄팀	8036-7422
하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관리팀	790-5341
의왕시청	희망복지지원과	무한돌봄팀	345-2423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팀	887-2889
양평군청	행복 돌봄 과	무한돌봄센터팀	770-2116
과천시청	주민생활지원실	무한돌봄팀	02-3677-2846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복지네트워크팀	8075-3239
남양주시청	희망 복 지과	통합사례관리팀	590-8659
의정부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행복팀	828-8787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사례팀	940-4554
구리시청	무한돌봄과	사례관리팀	550-8333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자원개발팀	8082-5792
포천시청	시민 복 지과	희망복지팀	538-3089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실	무한돌봄팀	860-2362
가평군청	희망복지실	무한돌봄팀	580-2266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무한돌봄팀	839-2462



2) 경기도 의료원 현황

병 원 명	소 재 지	진료시간	대표전화	응급센터
수원병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8880-114	8880-119 8880-129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홍선로 142		8285-000	8285-119 8285-129
파주병원	파주시 중앙로 207	평 일 08:30-17:30 응급실 연중무휴	940-9100	9409-119 9409-129
이천병원	이천시 경충대로 2742		639-4800	639-4888 639-4999
안성병원	안성시 고수2로17		8046-5000	8046-5199
포천병원	포천시 포천로 1648		539-9114	539-9119

3 관련 고시

(1)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4-203호) [별표2]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구 분	대 상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1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1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다.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2	혈우병(D66 ~ D68.4)
	장기이식의 경우
2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3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아래 상병의 경우
4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2)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13-4호) [별표3]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 분		대 싱	-	특정기호
1	[별지] 서식에 (C00~C97, D 우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 00~D09, D32~D33, D37~D	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48 으로 진료를 받은 경	V193
2	, - ,)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		V191
3		강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V192
		2도 (T20.2, T21.2, T22.2, T23 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		V247
4	환자가 등록일로 부터 1년간 [발참]	3도(T20.3, T21.3, T22.3, T23 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 (T31.11,T31.21~T31.22,T31.3 4,T31.51~T31.55,T31.61~T3 81~T31.88,T31.91~T31.99)	↑ 31~T31.33,T31.41~T31.4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 적 판단하에 등록기가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T20.2~T20.3, T21.2~T21.3 T25.3, T26.0~T26.4)인 경우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	V249
	수 있음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	7.3, T28.0∽T28.3)인 경우	V250



(3)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13-4호) [별표4]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 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5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 ~ 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 결핵(A15~A19)	V246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 ~ 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_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 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지중해빈혈(D56)	V232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D59.5)	V187
카.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V220
파.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함 (D69.1)	V106
- 에반스 증후군 (D69.30)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하. 무과립구중 (D70)	V108
거.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너.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V110
(D76.1, D76.2, D76.3)	V110
더.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러.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66
머.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버.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 ~ E77)	V117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인 대사장애 (E83.3)	V189
-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서. 레트증후군 (F84.2)	V122
어.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 Gl0 ~ Gl3)	V123
저. 파킨슨병 (G20)	V124
처.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커.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1)	V208
터. 다발성 경화증 (G35)	V022
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G40.4)	V233
허. 간질지속상태 (G41)	V125
고.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노.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도.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V168
로.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모. 중중근무력증 및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0, G71)	V012
보.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소.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오. 기타 망막 장애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색소망막염(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조.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I27.0)	V202
그 근기 이 케이커 프린님 (141.0)	V 202
초. 심근병증 (I42.0 ~ I42.5)	V127

코. 모야모야병 (I67.5).	V128
토. 폐색성 혈전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포.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구.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누.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두. 크론병 [국한성 장염] (K50)	V130
루. 궤양성 결장염 (K51)	V131
무.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K74.3)	V174
부.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수. 수포성 장애	_
- 보통 천포창 (L10.0)	V132
- 낙엽상 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반흔성 유사천포창 (L12.1)	V212
우. 후천성 수포성 표피분리증 (L12.3)	V176
주.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V223
추.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쿠. 연소성 관절염 (M08.0 ~ M08.3)	V133
투.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성 홍반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 ~ M35.7)	V139
푸.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후.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V177 V178 V141
V141
· –
V142
V239
V214
V240
V179
V180
V143
V144
V225
V226
V145
V146
V147
V148
V149
V150
V241
V181
V227
_
V151
V182
V228
V183
V154
I

NA∃ZZ (070 t)	17000
- 내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트. 치사성,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Q81.2) V184
프. 선천기형	_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	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두후군, V21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V15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증후군 (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흐.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 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여린X증후군 (Q99.2)	V245



(4)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4-203호) 제22조

-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 귀난치성 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 병분류기호를 말한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F00-F99. G40-G41)
- 2.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 3. 고혈압성 질환(I10-I15)
-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K77)
- 5. 당뇨병(E10-E14)
- 6. 〈삭 제〉
-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 8. 〈2007.7.1일자로 삭제〉
- 9. 대뇌혈관질환(I60-I69)
- 10. 두개내손상(S06)
- 11. 〈2007.7.1일자로 삭제〉
- 12. 갑상선의 장애(E00~E07)
-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작성기관	경기도청 무한돌봄복지과
전 화	031) 8008-2427
팩 스	031) 8008-4319
홈페이지	http://muhan.gg.go.kr